

- 마. ‘⑩ 환산점’은 평정자는 ‘⑨ 평정점×20/100’, 확인자는 ‘⑨ 평정점×40/100’로 계산함  
 바. ④부터 ⑪까지의 모든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재함(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)

[예시] 교육공무원승진규정[별지 제4호서식](갑지)

기관명 : (직인)

교사 근무성적평정표									
① 평정기간			② 확인자				③ 평정자		
2025. 03. 01.부터 2026. 02. 28.까지			직위 교장 성명 이 교 장 (인)				직위 교감 성명 박 교 감 (인)		
평정사항	근무수행 태도	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				⑨ 평정점	⑩ 환산점	⑪ 총점	
평정 대상자 소속	평정 대상자 성명	평정요소	④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 (10점)	⑤ 학습지도 (40점)	⑥ 생활지도 (30점)	⑦ 전문성 개발 (5점)	⑧ 담당업무 (15점)	⑨ 평정점	⑩ 환산점
△△ 고등학교	이율곡	평정자	10.00	40.00	29.50	5.00	15.00	99.50	19.90
		확인자	9.70	39.85	28.30	4.99	14.98	97.82	39.13
△△ 고등학교	이순신	평정자	9.80	39.00	29.30	4.99	14.99	98.08	19.62
		확인자	9.70	38.55	29.00	4.98	14.80	97.03	38.81
:	:	평정자	:	:	:	:	:	:	:
		확인자	:	:	:	:	:	:	:

## 5. 교사 「다면평가」 실시 및 「근무성적평정」과 합산 방법

### 가. 실시근거: 「교육공무원 승진규정」제28조의2 ~ 제28조의9

- 매 학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·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각각의 결과를 합산함
- 해당 학년도 초에 근무성적의 확인자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평가대상자의 동료교사 중 3명 이상 7명 이하를 위원으로 하는 ‘다면평가관리위원회’를 구성 · 운영함
- ‘다면평가자’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,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 ·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다면평가관리위원회가 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 이상을 선정(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8조의4 제2항)

- 평가대상자가 15명 이하인 경우: 3명 이상
- 평가대상자가 16명 이상 20명 이하인 경우: 4명 이상
- 평가대상자가 21명 이상 25명 이하인 경우: 5명 이상
- 평가대상자가 26명 이상 30명 이하인 경우: 6명 이상
- 평가대상자가 31명 이상 35명 이하인 경우: 7명 이상
- 평가대상자가 36명 이상인 경우: 8명 이상